

# 2012년 경행특채 행정법 문제 및 해설

## (윌비스 고시학원 김종석 교수)

### 1.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판례를 통해 발전한 행정법의 원칙이지만 현재는 실정법에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 ③ 판례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의하여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판례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 사업승인가능성에 대한 회신은 사업신청자인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다.

<해설>

-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현대복지국가 기능이 강조되면서 20세기 초 이래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 의해 성립·발전되다가 1976년 독일연방행정절차법에 규정되었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3면 IV 1. (2)] 우리나라 실정법에도 그 근거가 있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3면 2. (1)]
- ②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6.27, 2002두6965) 【시정명령처분취소】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8면 관련판례5]
- ③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9.12, 96누18380) 【토지형질변경행위 불허가처분취소】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6면 상단 관련판례2]
- ④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이전까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화관광부장관(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회신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6.4.28, 2005두6539) 【반려처분취소】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9면 관련판례11]

<답> ①

### 2. 행정법관계의 특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② 판례에 의할 때, 무효가 아닌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의하여 국세를 이미 납부한 개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 ③ 불가변력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효력이다.
- ④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 ①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위법이 확인되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비교표준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개별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5.9.15, 95누6311) 【개별토지가격 경정처분취소】고 보고 있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35면 (6)]
- ②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1999.8.20, 99다20179) 【사해행위취소 등】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32면 상단 관련판례2] 따라서 조세 부과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민사법원은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여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인용판결을 할 수 없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31면 ② ㉠]
- ③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에서 나오는 실체법상의 효력이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34면 IV 1. 도표 불가변력의 성질]
- ④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의 수소법원(민사법원)은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그 위법여부를 심리·판단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30면 7. (2) ①]

<답> ②

### 3. 다음 중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가 아닌 것은?

- ①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 ② 전염병환자의 강제수용
- ③ 국립대학교 재학생과의 관계
- ④ 국가와 납세자와의 관계

<해설>

- ① 공법상 근무관계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93면 5. 종류]
- ②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93면 5. 종류]
- ③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93면 5. 종류]
- ④ 일반권력관계의 예로서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91면 하단 각주 ②]

<답> ④

4. 다음 사례를 읽고 보기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개인택시 운전자 甲은 운전도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관한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거 甲에게 벌점 15점을 부과하였다.

-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은 법규명령이다.
-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벌점은 각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15점은 확일적으로 받게 되는 확정 점수이다.
- ③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 벌점의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위 [별표 28]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대외적 효력이 없어 국민을 구속하지 않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된다.

<해설>

- ① 판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본다(대법원 1997.10.24, 96누17288).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195면 (2) ① 도표 ㉔]
- 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현 제91조) 제1항 [별표 16](현 별표 28)의 벌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항목 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점하여 이를 누적한 다음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상계치로 뺀 점수를 '누산점수'로서 관리하고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를 '처분벌점'으로 하여 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각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법원 1998.3.27, 97누202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별표 16]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은 각 항목별로 벌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각 벌점을 배점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정도를 따져 각 최고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점수를 배점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별표상의 벌점은 확정적인 점수라고 본 사례>
- ③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상상 벌점의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8.12, 94누2190)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883면 관련판례 9]
- ④ 판례에 따르면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188면 2. (1) 도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10.24, 96누17288)

<답> ②

**5.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추상적 법령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행정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으나 시행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령제정을 거부하거나 입법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하는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하자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 ④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 ①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1992.5.8, 91누11261).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215면 관련판례]
- ②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및 대통령령에 따라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부작위)하고 있자 치과의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헌법재판소 1998.7.16, 96헌마246)에서 대법원이 행정입법부작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배제하므로 다른 구체적 차이가 없는 경우(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여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216면 4.]
- ③ 일반적으로 시행령의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대법원 2007.6.14, 2004두619)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무효확인】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185면 관련판례1]
- ④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0.9, 2003무23).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190면 III 1. (1) ②]

<답> ①

**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② 무효인 행정행위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 불가쟁력이 인정된다.
- ③ 행정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 부분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무효인 행정행위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는 경우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해설>

① 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5.16, 97누2313).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59면 도표 상단 판례1]

②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34면 2. (3) ①]

③ 행정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그 부분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행위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중요한 것이어서 행정청이 그것 없이는 행정행위를 발하지 않았으리라 판단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행위는 전체가 무효로 된다.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10판, 269면]

④ 원고가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 학설과 판례는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이라는 형태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또한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예외적 행정심판전치, 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3.3.12, 92누11039).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954면 레벨업 I. 2. 가. (1) 및 (3)]

<답> ④

## 7. 다음 부관의 설명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법인설립허가 - 해제조건
- ② 2012년 2월 25일까지의 도로사용허가 - 기간
- ③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점용료의 부가 - 부담
- ④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 철회권 유보

<해설>

① 진입도로의 완공을 조건으로 한 주유소영업허가와 같이, 학교법인은 시설을 완성하여야 설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이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02면 2. (2) 도표]

② 도로사용허가의 종기이므로 기한이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03면 3. (2) ①]

③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00면 Tip ①]

④ 일단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되,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해제조건이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02면 2. (2) 도표 해제조건의 예]

<답> ③

8. 다음 보기 중 하자승계를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암매장분묘개장명령과 후행계고처분
- ㉡ 기준지가고시처분과 토지수용처분
- ㉢ 안경사시험합격처분과 안경사면허처분
- ㉣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과 토지수용재결처분
- ㉤ 수강거부처분과 수료처분
- ㉥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처분
- ㉦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 인정.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45면 3. (1) 도표 ③]
- ㉡ 인정.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45면 3. (1) 도표 ⑦]
- ㉢ 인정.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45면 3. (1) 도표 ⑥]
- ㉣ 부정.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그 자체의 위법은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2.12.11, 92누55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46면 도표 ⑥]
- ㉤ 부정. 수강거부처분과 상관없이 수료처분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대학교 총장으로서 수료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수료처분이 그 전에 행하여진 수강거부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강거부처분의 하자가 수료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12.23, 94누477) 【수강거부처분취소 등】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46면 도표 ⑮]
- ㉥ 인정.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45면 3. (1) 도표 ⑩]
- ㉦ 부정.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46면 도표 ⑬]

<답> ③

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정인을 위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상의 힘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특허라 하며, 이러한 특허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면허를 들 수 있다.
- ②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인가라 하며, 인가의 예로는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이에 해당한다.
- ③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인가 아닌가 또는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공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정행위를 공증이라 하며, 공증의 예로는 토지대장에의 등재가 이에 해당한다.
- ④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수리라 하며, 이러한 수리 중 ‘체육시설업자 등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의 경우 대법원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수리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설>

- ① 특허의 정의와 예로 옳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276면 (1) ① 및 도표 ⑨]
- ② 인가의 정의는 옳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278면 (2) ① ㉠] 그러나 공유수면매립면허는 특허에 해당한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276면 도표 ⑧]
- ③ 공증이 아니라 확인의 정의이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286면 1. (1) ①] 토지대장에의 등재는 공증의 예로 옳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288면 2. (1) Tip ①]
- ④ 수리의 정의는 옳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296면 4. (1)] 그러나 대법원은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신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검토결과 통보는 수리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2.26, 2006두16243) 【골프장회원권 모집계획 승인처분취소】고 보았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161면 (2) 관련판례5]

<답> ①

**10. 행정질서벌(과태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 ② 대법원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다른 성질의 행정벌이므로 동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까지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 ④ 행정질서벌 부과에 근거는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 ① 행정질서벌의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79면 III 1.] 행정질서벌은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80면 2. (2) ②]
- ②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허가기간의 범위를 넘어 운행한 경우에 차량소유자(피고인)가 이미 관련 법조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아 납부한 후에 다시 피고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4.12, 96도158) 【자동차관리법위반】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87면 1. (2) 관련판례]
- ③ 헌법재판소는 양자(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는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병과하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헌법재판소 1994.6.30, 92헌바38).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87면 1. (3)]
-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를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7조 제1항).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79면 III 2.]

<답> ②

11.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공법상 계약은 법령에 의하여 체결의 자유와 형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 ③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④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령상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

<해설>

① 실정법상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93면 1. (2)] 행정절차법에도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447면 V 1. (1) 레벨업 ②]

② 계약체결 여부는 당사자 간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계약자유 원칙), 생활필수적 역무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공급의무와 같이 계약이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예: 일반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 또한 공법상 계약은 공익의 실현작용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사전에 정형화되어 부합계약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예: 영조물규칙, 공급규정 등)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체결여부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98면 VI 1. 91) ①]

③ 공법상 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판례도 시립무용단원의 해촉사건 등에서 공법상 계약에 대한 쟁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99면 (2) ② ㉠]

④ 공법상 계약의 경우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은 법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된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401면 VII 1.]

<답> ③

12.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명문규정은 없다.
- ② 대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서검정에 관한 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이 교과서의 저술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① 현행법상 공정력을 직접적·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공정력을 추론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수 존재한다. 그 예로 취소쟁송제도, 직권취소제도, 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 집행부정지의 원칙 등이 있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28면 (2)]

②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은 그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 여부까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법원이 위 검정에 관한 처분의 위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불가하고,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또는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동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88.11.8, 86누618) 【2종교사용지도서 1차심사결과 부적판정처분취소】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262면 V 1. 관련판례2]

③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6.5.25, 2003두4669).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66면 6. (2) 관련판례]

④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불가변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행정행위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불가변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336면 (2) ①]

<답> ②

**13.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와 그 법적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이유제시의 하자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에 따라 무효인 하자와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된다.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자를 통상 무효사유로 보고 있다.
- ③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데, 여기에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하더라도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

<해설>

①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청구권은 청문에만 인정되고, 의견제출제도에 인정되지 않는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466면 각주]

② 통설과 판례의 견해인 중대명백설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하다면 무효사유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된다. 최근의 주류적 판례는 취소사유로 보는 경향에 있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474면 상단 ②]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4.9, 84누4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③ 대법원은 ‘교원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28, 2003두674) 【임용거부처분취소】 고 판시한 바 있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460면 레벨업 관련판례]

④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는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을 하는 문서의 문언만으로 행정처분의 내용이 분명한 경우 그 문언과 달리 다른 행정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7.28, 2003두469) 【지방공무원지위확인】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457면 상단 관련판례]

<답> ③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집행의 절차로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직접강제,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 ②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으며, 행정질서벌의 종류로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다.
- ③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강제징수, 집행벌(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다.
- ④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벌에 속한다.

<해설>

① 대집행의 절차는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 비용징수 순서이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40면 각주]

② 행정벌에는 처벌의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질서벌이란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가 가해지는 행정벌을 말한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80면 2. (2) ①] 과징금은 급부하명의 행정행위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구분된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604면 3. 도표]

③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옳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32면 II]

④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 질서문란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인 반면, 행정벌은 일반행정법관계(일반권력관계)에서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구별된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78면 II 1.]

<답> ③

**15. 다음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사례이다. 보기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구 구청장은 2000.5.1.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甲이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하게 하여, 그곳에 있던 甲소유의 ‘틸식트로리’ 기관 7대를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이유로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수거하였다. 당시 단속공무원 乙 등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甲에게 제시하고 수거증을 교부하였으며,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는 부여하지 않았다.

-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② 단속을 실시하는 중에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甲이 저항하자 단속공무원 乙 등이 과도하게 실력행사를 하여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국가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③ 단속하기 전 甲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 원칙

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④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단속공무원 乙 등이 영장없이 단속한 행위는 바로 위법한 것이 된다.

<해설> (헌법재판소 2002.10.31,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부분 위헌제정】

①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행정상 즉시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라도 다시 행정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의 한계에 기속된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61면 관련판례]

② 위법한 즉시강제로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63면 (3)] 단속공무원 乙 등이 과도하게 실력행사를 하여 甲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A구는 甲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거에 앞서 청문이나 의견제출 등 절차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장애에 대하여 바로 실력을 가하는 작용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사전적 절차와 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거의 경우 영장주의의 배제가 용인되고, 그 성격상 사전적 절차와 친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체의 절차적 보장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일정한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 제24조 제4항은 관계공무원이 당해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6항은 수거 등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법률조항이 영장주의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행정상 즉시강제를 인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률조항은 이미 그 자체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562면 관련판례2]

<답> ④

16. 다음 중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재정사정은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해설>

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1.27, 2003다49566) 【김포공항 소음피해사건】

② 예산부족이 면책사유가 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 판단에 있어서의 참작사유에 불과하고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67.2.21, 66다1723).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722면 상단 ② 관련판례1]

③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0.5.26, 99다53247)

【청원군 제방도로 유실사건】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720면 (4) ① ㉠ 관련판례3]

④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1.7.27, 2000다56822).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717면 상단 관련판례3 ②]

<답> ③

17.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 ①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 ③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해설>

- ①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에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조 제4항의 규정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0.12.21, 90다6033·6040·6057 병합) 【손해배상(기)】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690면 상단 관련판례1]
- ②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2.10, 97다45914).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705면 관련판례4]
- ③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670면 ③ 각주 ③④ 및 687면 5) 관련판례3]
- ④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민법의 특별법인 사법으로 보면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데 불과하다.”(대법원 1972.10.10, 69다701) 【손해배상】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669면 상단 ㉠]

<답> ②

18.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에 행한 처분청의 원처분 취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나, 위원장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 ④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해설>

- 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의 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899면 4. (1) ①]
- ② 처분의 취소재결이 있으면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1036면 V 2.] 따라서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에 행한 처분청의 원처분 취소처분은 형성적 재결의 결과통보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887면 ⑩ 도표 처분성 부정예 ②]
- ③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1032면 III 1. 조문]
- ④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므로,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5.12.9, 2003두770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취소】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1039면 상단 관련판례2]

<답> ②

**19.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침해 또는 침해우려의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②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③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그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데 그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해설>

- 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6.3.16, 2006두330 전원합의체)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117면 관련판례2]
- ②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6.2, 2004마1148·1149) 【공사착공금지처분】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842면 관련판례1]

③ 관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7.9.20, 2005두6935).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 842면 관련 판례2]

④ 관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9.9.24, 2009두2825).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 847면 관련 판례]

<답> ①

20. 다음 보기 중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정쟁송수단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의무이행심판	㉡ 예방적 부작위소송	㉢ 의무이행소송
㉣ 당사자소송	㉤ 재결취소소송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행정심판에 있어서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 995면 3. (1)]

㉡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 806면 4. (2) ①]

㉢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 805면 2. (2) ①]

㉣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을 행정소송의 종류의 하나로 들고 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2호).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 797면 1. (2)]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 869면 (10)] 즉, 행정소송법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취소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답> ④